

##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상호(법인명)	성명(대표자)	
	주소	전화번호	
사업분야 (해당사업 분야 √표시, 복수 신청가능)	형식증명 [ ]	부가형식증명 [ ]	제작증명 [ ]
	기술표준품형식증명 [ ]	부품 등 제작자증명 [ ]	정비조직인증 [ ]
	국제 항공운송사업 [ ]	국내 항공운송사업 [ ]	소형 항공운송사업 [ ]
	항공기사용사업 [ ]	국외운항 항공기 [ ]	전문교육기관 [ ]
	항공교통업무증명 [ ]	공항운영증명 [ ]	항행 안전시설 [ ]
비고			

「항공안전법」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1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을 받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1부 2.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이행계획서 및 이행확약서 1부 3.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운영절차 1부.	수수료(Fee)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